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추은희 의원 외 15명

2.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안 제4조~제7조)

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안 제8조)

라.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9조~제14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3. 4. 5. ~ 4. 10.)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21.11.19.)됨에 따라 지원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필수업무 지정 및 실태조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 유지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